

제276회 강서구의의회 2차 정례회
행정·재무위원회 제6차 회의

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
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2020. 12. 3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의회 행정·재무위원회

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0년 12월 3일
전문위원 배 금 택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2020 - 132
- 나. 제 출 자 : 황동현 의원 외 11명
- 다. 제출일자 : 2020년 11월 3일
- 라. 회부일자 : 2020년 11월 18일

2. 제안이유

우리구가 설치·건립하는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표지판 등에 명기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알권리에 부응하고,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
- 나. 공공시설물 등, 표지판 등, 설치 및 건립비용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
- 다.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을 규정함(안 제3조)
- 라. 공개의 범위 및 방법과 내용을 규정함(안 제4조, 제5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

나. 협조부서 : 재무과

다. 입법예고(2020.11. 6. ~ 11. 11.) :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 취지

서울특별시 강서구 및 구 출자기관 등에서 설치 및 건립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투입된 총 비용을 구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판 등에 기재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

나. 주요 내용

- 본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
 - 공공시설물, 표지판, 설치 및 건립비용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
 -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을 규정함(안 제3조)
 - 재물조사 대상물품과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(도로포장, 보도블럭, 맨홀 등)에는 예외로 함
 - 공개의 범위 및 방법과 내용을 규정함(안 제4조, 제5조)
 -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와 공공시설의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공개하도록 함
- ※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공공시설물 범위와 공개 내용은 <붙임 1> 참고

다. 종합 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건립 및 공공시설물 설치시 투입된 비용에 관한 사항을 표지판 등에 표기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것으로
- 현재 서울시에서는 본청과 12개 자치구가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
-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이 공개될 경우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유도하고 구민들의 알 권리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- 다만,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, 설치방법에 대해서는 향후 시행규칙이나 지침 등을 마련하여 규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

<참고> ※ 서울시(자치구 포함) 조례 제정 현황

(2020년 10월 기준)

연번	자치구	공개범위(표기금액 이상인 경우)		비공개사항
		공공시설	공공시설물	
1	서울시 본청	1억	50만원	재물조사대상, 도로포장, 맨홀, 보도블럭 등
2	관악구	1억	50만원	
3	구로구	1억	50만원	
4	동대문구	1억	50만원	
5	서대문구	1억	50만원	
6	양천구	1억	50만원	
7	용산구	1억	50만원	
8	동작구	1억	100만원	
9	마포구	1억	100만원	
10	영등포구	1억	100만원	
11	은평구	1억	100만원	
12	중구	1억	100만원	
13	노원구	1억	500만원	

공개대상 공공시설물(제4조제2항 관련)

구 분	시 설 물
1. 도로·교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방범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· 주·정차 단속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· 도로표지판 및 버스표지판 · 가로등, 보안등 · 벤치, 그늘막 등 편익시설물 · 자전거 보관대 · 광고물 게시대
2. 공원·체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공원 안내표지판 · 벤치, 음수대, 공중화장실 등 편익시설물 · 미술작품, 조형물, 놀이기구 · 체육시설물(테니스장, 축구장, 운동기구 등) · 하천시설물
3. 청소·위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가로휴지통
4. 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그 밖의 시설물

공공시설물 등에 명기해야 할 사항(제5조 관련)

1. 공공시설물 등의 명칭
2. 설치일
3. 공사기간
4. 발주기관
5. 시공, 설계, 감리자의 성명(법인일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)
6. 설치 및 건립비용
7. 관리부서

□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
 - 가.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·위치 및 구역의 조정
 - 나.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그 운영·관리
 - 다. 산하(傘下) 행정기관의 조직관리
 - 라.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·감독
 - 마. 소속 공무원의 인사·후생복지 및 교육
 - 바.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
 - 사. 예산의 편성·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
 - 아. 행정장비관리,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
 - 자. 공유재산관리(公有財産管理)
 - 차.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
 - 카.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

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 - 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 - 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 - 다. 생활이 곤궁(困窮)한 자의 보호 및 지원
 - 라. 노인·아동·심신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 - 마. 보건진료기관의 설치·운영
 - 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 - 사. 묘지·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·관리
 - 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 - 자. 청소, 오물의 수거 및 처리
 - 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
3. 농림·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
 - 가. 소류지(小溜池)·보(洑)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 - 나. 농산물·임산물·축산물·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
 - 다. 농업자재의 관리
 - 라. 복합영농의 운영·지도
 - 마.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·지도
 - 바. 농가 부업의 장려
 - 사. 공유림 관리
 - 아.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

- 자. 가축전염병 예방
- 차. 지역산업의 육성·지원
- 카.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
- 타. 중소기업의 육성
- 파.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·지원
- 하. 우수도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

4.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에 관한 사무

- 가. 지역개발사업
- 나. 지방 토목·건설사업의 시행
- 다. 도시계획사업의 시행
- 라. 지방도(地方道), 시군도의 신설·개수(改修) 및 유지
- 마.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
- 바.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
- 사. 자연보호활동
- 아.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
- 자. 상수도·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
- 차.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카. 도립공원·군립공원 및 도시공원, 녹지 등 관광·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타.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
- 파. 주차장·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하.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
- 거.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

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

- 가. 유아원·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·운영·지도
- 나. 도서관·운동장·광장·체육관·박물관·공연장·미술관·음악당 등 공공 교육·체육·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다. 지방문화재의 지정·등록·보존 및 관리
- 라. 지방문화·예술의 진흥
- 마. 지방문화·예술단체의 육성

6.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

- 가.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(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)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·감독
- 나. 지역의 화재예방·경계·진압·조사 및 구조·구급